

인터넷 법제동향

Laws and Policy Trends of the Internet



CONTENTS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6. 8.) 1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6. 8.) 2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6. 15.) 3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6. 8.) 4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6. 8.) 6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대표발의, 2021. 6. 2. 제안) 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021. 6. 2. 제안) 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2021. 6. 2. 제안) 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6. 3. 제안) 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1. 6. 3. 제안) 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6. 15. 제안) 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6. 16. 제안) 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6. 17. 제안) 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6. 22. 제안) 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대표발의, 2021. 6. 25. 제안) 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2021. 6. 30. 제안) 18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대표발의, 2021. 6. 15. 제안) 19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021. 6. 23. 제안) 21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2021. 6. 17. 제안) 22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021. 6. 2. 제안) 23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21. 6. 24. 제안) 24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2021. 6. 24. 제안) 25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021. 6. 9. 제안) 26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2021. 6. 10. 제안) 27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2021. 6. 25. 제안) 29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2021. 6. 9. 제안) 31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6. 17. 제안) 32

CONTENTS

해외 입법 동향

<OECD>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에 관한 개정 권고 승인 (2021. 5. 31.) 33

<미국>

- 미국 연방 상원, 사이버범죄 대응 강화 위한 「국제 사이버범죄 방지법(안)」 재발의 (2021. 6. 17) 36
- 미국 대통령, 미국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적대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 서명 (2021. 6. 9.) 39
- 미국 NIST, AI 시스템 신뢰도 측정을 위한 보고서 초안 공개 (2021. 5. 19) 42

<영국>

- 영국 정부,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의 규제를 강화한 「온라인 안전법(안)」 공개 (2021. 5. 12.) ... 45
- 영국 정부, 공공부문의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 사용에 관한 프레임워크 공개 (2021. 5. 13.) 48

<호주>

- 호주 의회, 온라인 사용자 안전을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한 「온라인 안전법」 통과 (2021. 6. 22) 51

<일본>

- 일본 참의원, 디지털청 설립 및 소관 업무 등을 규정하는 「디지털청설립법」 통과 (2021. 5. 12.) 54
- 일본 총무성,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보안 환경에 대비한 '원격근무 보안 가이드라인 제5판' 발표(2021. 5. 31) 58

해외 단신

<베트남>

- 베트남 정보통신부, IoT기기의 네트워크 정보 보안에 관한 기본 요건 목록을 정한 결정 발행 (2021. 6. 15.) 63

〈공포된 법령〉

법령명	공포일	주요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1. 6. 8.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총괄 업무 내용 및 검직 가능 업무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1. 6. 8.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화
「산업융합 촉진」 일부개정법률	2021. 6. 15.	-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 법령 정비 요청제 및 임시허가 전환 근거 마련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2021. 6. 8.	-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서비스 활용 방식 확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1. 6. 8.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임시허가 제도 개선

〈국회 제출 법률안〉

법령명	대표발의 (날짜)	주요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2021. 6. 2.)	- 유통금지의 대상이 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의무 부과
	김영식의원 (2021. 6. 2.)	- 해외 사업자가 특정 국내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
	송재호의원 (2021. 6. 2.)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
	김상희의원 (2021. 6. 3.)	-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 마련 -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 추가
	박성중의원 (2021. 6. 3.)	- 정보 삭제 등을 요청하는 자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양정숙의원 (2021. 6. 15.)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이 결제된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고 약관으로 그러한 의무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함
	양정숙의원 (2021. 6. 16.)	-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이용에 장애를 주는 행위 처벌
	양정숙의원 (2021. 6. 17.)	-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검색결과를 도출하는 기본원칙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법령명	대표발의 (날짜)	주요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2021. 6. 22.)	- 포털,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함
	류호정의원 (2021. 6. 25.)	- 알고리즘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유형 규정 - 알고리즘에 관한 최소한의 규제 도입
	이원욱의원 (2021. 6. 30.)	- 불법촬영물 등에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 추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2021. 6. 15.)	- 알고리즘 등 자체적인 판단과 기준에 따라 신문 기사를 추천 하거나 편집하는 행위 제한 - 검색에 의한 결과를 보여줄 경우에는 상위 노출 등과 같은 기사 배열의 기본방침 공개 의무화
	이병훈의원 (2021. 6. 23.)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의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그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매개하도록 함
	임오경의원 (2021. 6. 17.)	-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 발행자가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나 업무담당자의 주소 또는 국내대리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의무 부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2021. 6. 2.)	- 해외 사업자가 특정 국내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
	박대출의원 (2021. 6. 24.)	- 앱 마켓 사업자에 입점한 모바일콘텐츠 개발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한준호의원 (2021. 6. 24.)	- 특정 기준을 상회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2021. 6. 9.)	- 앱 마켓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행위기준 구체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2021. 6. 10.)	- 전자상거래법 체계 및 용어 재정비 등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 마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확대 및 책임 현실화
	이정문의원 (2021. 6. 25.)	- 전자상거래법 체계 및 용어 재정비 등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 마련 -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피해방지 협조 의무 부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의원 (2021. 6. 9.)	-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2021. 6. 17.)	-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개발자·공급자·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 원칙 제정 및 공표 의무화

국내 입법 동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 2021. 6. 8., 시행 2021. 12. 9.)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이유

- 현행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자산총액과 매출액 등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열거된 업무를 총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임원급이라는 모호한 정의로 법 해석을 둘러싼 혼선이 있음

▶ 주요내용

- 이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위임하고, 신고의무가 없는 소규모 기업의 CISO를 대표이사로 간주하여 정보보호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정보보호 분야 발전을 고려하여 일부 업무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제45조의3제1항 및 제4항 개정)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내 입법 동향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 2021. 6. 8., 시행 2021. 12. 9.)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이유

- 최근 온라인 패션 스타트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의 정보보안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보호 투자, 인력현황 및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여, 정보보호의 공시를 사업자의 재량에 따른 임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현황공시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2021년 5월 기준 57개의 기업만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고 있어 공시제도의 실효성도 적은 상황임

▶ 주요내용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내 입법 동향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 2021. 6. 15., 시행 2021. 9. 16.)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개정이유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기존 법·제도를 뛰어넘는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빠르게 등장함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2018년 10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법률 제15828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으로 도입되어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규제특례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요청제 및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마련하여 중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는 주관부처별로 각각 제도를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에 한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간사가 되도록 함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내 입법 동향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 2021. 6. 8., 시행 2021. 12. 9.)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개정이유

-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활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여 그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서비스 활용 방식을 확대하려는 것임
-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자원 관리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등의 장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 행정기관 등의 장이 업무협약,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민간 서비스와 결합하거나 민간 서비스를 전자정부서비스로 그대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민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1항 및 제3항)
-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정보주체는 해당 본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본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제공 요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2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이용하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준데이터를 관리할 관리기관을 함께 정하도록 함(제44조의2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관리하여야 하고, 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정보가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함(제44조의3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전담기관의 종사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봄(제54조제3항·제4항 및 제75조제4호 신설)
-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자원 관리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 등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4조의2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특정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과 통합·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제56조의3 신설)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내 입법 동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 2021. 6. 8., 시행 2021. 12. 9.)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신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을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그런데 유사한 취지로 임시허가제도를 운용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경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음
- 소상공인의 몰락은 자칫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소상공인 스스로도 협동조합 결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주요내용

- 관계기관의 장이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고,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임시허가 제도를 동일한 취지의 다른 법률에 맞추어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행정불편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내 입법 동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2021. 6. 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성범죄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에는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히 훼손하여 성범죄 불법촬영물에 버금가는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정보도 다수 유통이 되고 있음. 또한 도박정보, 불법무기 제작정보 등 법률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도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만 하고,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유통방지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주요내용

- 현행법 상 유통금지의 대상이 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향력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9제1항제4호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021. 6. 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법 위반 사항 여부 등을 판별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에서의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기만 하면 누구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대한민국에 각각 지사를 두고 있는 구글, 애플 등의 해외 사업자가 제3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국내대리인으로서의 정당한 의무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 불법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 또는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대표발의, 2021. 6. 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할 뿐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소위 거짓 영상 또는 거짓 음성을 사용하여 이용자를 속이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 재력이나 외모 등을 내세워서 친교관계를 형성한 후 금전을 요구하는 로맨스피싱(Romance phishing) 등 신종 사기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임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2명 이상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정보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제44조의8제2항 신설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6. 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년 기준 3만 2,834건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이 이루어짐
- 그러나,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지 못한 스미싱 문자의 경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이용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이용중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동통신사 등과 협력하여 '20년 기준 연간 95만 건의 스미싱 문자를 탐지하여 접속경로(URL)만을 차단하고 발신번호에 대한 제재가 없어 추가적인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을 신설하여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함으로써, 성매매 범죄와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 ※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1. 6. 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그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통지의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어 삭제등의 요청 경과 또는 결과를 신속하게 통지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바, 해당 삭제등의 요청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점임을 고려할 때 삭제등의 요청 이후 상황을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주요내용

-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6. 1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구독서비스란 이용자가 일정 기간 요금을 지불하고 원하는 콘텐츠를 정기·비정기 또는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임. 최근 구독서비스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품목과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시장규모도 확대되는 추세임
- 그런데 구독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자동결제의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결제방식은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음
- 즉, 소비자는 최초 계약 시 정기적인 자동결제를 포함한 약관에 동의를 하고 구독서비스에 가입하나, 해당 구독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한 사실 자체를 잊거나 결제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지속적인 이용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해지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이용요금을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요금의 결제일 7일 전까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이 결제된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고 약관으로 그러한 의무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6. 1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온라인에서 인기가수들의 공연 티켓 등을 구매할 때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으로 구매한 후 원래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해당 티켓 등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구매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오프라인에서의 이와 유사한 행위는 소위 암표매매라 하여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으나, 온라인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입법적 정비의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온라인에서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대학교에서의 수강신청, 연예 분야의 온라인 투표, 게임 등에서 타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에 장애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발생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똑같이 금지행위로 포함시켜야 할 것임

▶ 주요내용

-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이용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8조제4항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6. 1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시대의 도래와 네트워크 기반 디지털 사회 고도화로 인터넷상에서의 정보 검색 결과는 국민의 일상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뿐 아니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할 것임
- 특히, 검색내용·검색순위 등 정보검색서비스의 정보검색결과가 이용자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검색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라 함)는 오픈마켓에서 자사 실적이 급증한 반면, 이에 비해 타 사업자의 경우 실적이 하락하면서 검색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는 정보검색결과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광고와 정보검색결과를 구별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임

▶ 주요내용

-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가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검색결과를 도출하는 기본원칙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검색결과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인터넷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6. 2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정보의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권리가 침해된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음
-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불법·유해정보의 유통 속도와 사회적 파급력이 방송에 비견될 정도로 성장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마련된 이용자 보호 방안만으로는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이를 통한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됨
- 반면,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는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건전한 정보 유통 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자 내부 자율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이용자를 대표하여 주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또는 허위·과장광고와 같은 서비스 유형별 이용자 이익저해 우려가 높은 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효율적인 통제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자율규제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포털,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불법·유해정보 유통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2항 신설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대표발의, 2021. 6. 2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촉발한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은 배달, 배송, 택배, 온라인 쇼핑 및 유통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털사이트운영사, 언론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은 기업의 이윤창출 방식뿐만 아니라 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알고리즘과 알고리즘 서비스를 법률에 정의하고, 알고리즘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유형을 분류하여 규정하는 한편, 알고리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이해관계자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알고리즘에 관한 최소주의적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과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알고리즘과 알고리즘 서비스 및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 등을 정의함(안 제2조제14호부터 제20호까지 신설)
- 알고리즘의 설계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알고리즘분쟁조정위원회를 둠(안 제61조의2 신설)
- 알고리즘분쟁조정 절차와 조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1조의4부터 제61조의7까지 신설)
-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1조의8)
-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이하 “투명성위원회”라 함)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투명성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직무상 독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1조의9부터 제61조의14까지 신설)

- 알고리즘이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자 등의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알고리즘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알고리즘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1조의15 신설)
-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자 등이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61조의16 신설)
- 투명성위원회가 알고리즘 서비스가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능정보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1조의18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육의원 대표발의, 2021. 6. 3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의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역시 비난가능성 및 그러한 행위가 가져올 사회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물학대의 사진 또는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하게 확산되는 일을 막을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유통방지 대상 정보로서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9제1항제4호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대표발의, 2021. 6. 1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신문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할 때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정도만 공개토록 할 뿐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 이로 인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의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 같은 기사배열을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행하는 것으로 아무런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하나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고 있고 따라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도 특정 언론사의 기사가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배열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하여 해결되기 어려울 것임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검색하여 그 결과를 보여줄 경우와 언론사가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에 대해서만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도록 하여 알고리즘 등 자체적인 판단과 기준에 따라 기사를 추천하거나 편집하는 행위는 제한하고자 하며 다만 검색에 의한 결과를 보여줄 경우에는 상위 노출 등 기사 배열의 기본방침을 공개하도록 하였음
- 아울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이용자가 특정 언론의 기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제목에 비속어가 들어간 경우나 타 언론사의 기사를 베낀 경우, 광고성 기사 등에 대해서는 기사 제공 또는 매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등 이용자를 중심으로 인터넷 뉴스 전반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독자가 검색한 결과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와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 등이 직접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에만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독자가 해당 언론사의 기사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게 함(안 제10조제3항)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할 때 제목에 비속어가 들어간 경우, 다른 언론의 기사를 베낀 경우, 광고성 기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기사에 대해서는 제공 또는 매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제공한 내역,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거부한 내역을 보관 및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하는 과정 전반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운영할 경우 언론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9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021. 6. 2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으며,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가 특정 이슈와 관련된 기사를 모아 재배포하여 일방적으로 여론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의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에 그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매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2021. 6. 1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이유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의 등록 관청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구글 등 해외사업자 중 일부는 실제로는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다는 사유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공개,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에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국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가 국내대리인의 국내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등록사항으로 국내 주된 업무담당자 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영업소 소재지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 안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국내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나 업무담당자의 주소 또는 국내대리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9조제6항)
- 국내에 사무소·영업소나 업무담당자가 없는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의3)
-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의4 및 제39조제2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021. 6. 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 보호 업무 및 자료제출의무 등을 수행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에서의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기만 하면 누구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대한민국에 각각 지사를 두고 있는 구글, 애플 등의 해외 사업자가 제3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국내대리인으로서의 정당한 의무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 또는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8제2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21. 6. 24.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플레이스토어) 점유율은 약 7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글의 정책 하나가 중소 모바일콘텐츠 개발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함
- 현재 구글은 게임 콘텐츠에 한해서 '인앱 결제 의무화'를 시행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하지만 10월 시행 예정인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은 인앱 결제 의무화 대상을 게임 이외 디지털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15%~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임
- 인앱 결제 정책이 시행되면 국내 중소 모바일콘텐츠 개발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주요내용**

-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이용자 수, 사업규모, 시장 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앱 마켓 사업자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한 모바일콘텐츠 개발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대표발의, 2021. 6. 24.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비대면, 디지털 위주의 사회 환경에서 플랫폼 기반 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온라인 동영상, 광고, 콘텐츠 거래, 배달 중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극소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에 달하는 등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수천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대형 플랫폼 기반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독점은 과도한 소비자 요금 인상, 소상공인 및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수수료 기준 강요 등 폐해로 귀결되고 있으며, 이용자에 대한 차별 대우와 암묵적인 소비자 부담 전가 유도 등 소위 ‘갑질’ 행위가 만연하여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현행법 체계상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단적 요금·수수료 인상 등에 대한 안전장치와 법적 규율은 전무(全無)한 실정으로,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우리 소비자의 피해만 가속화 될 우려가 있음

▶ 주요내용

-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관련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요금, 수수료, 이용조건 등에 대한 이용약관심의 위원회를 두어 이용약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ICT 시장 환경에 걸맞은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021. 6. 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이유

-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자체 결제시스템을 사용하게 하는 인앱결제를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웹툰, 음원,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2021년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임
- 이로 인해 콘텐츠 사업자의 선택권 침해 및 경영악화 문제가 우려되고 있으며 결제 수수료 확대 정책은 모바일 콘텐츠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특히, 도서정가제가 시행 중인 출판업의 경우 전자 출판물의 소비자 가격 상승 우려 등으로 인해 동일 출판물의 동일 가격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모호해 현행법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주요내용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행위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2021. 6. 1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도 재편되고 있음
- 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은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거래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율체계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또한,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별도 규율체계 수립은 전세계적인 추세로, 중국, 일본, EU 등에서는 이를 위한 입법도 본격화되고 있기에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정보교환 매개’, ‘연결수단 제공’, ‘거래 중개’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2조)
-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상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중 ‘연결수단 제공’ 플랫폼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해당)의 신원정보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바 소비자가 해당 연결수단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신원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신원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청약접수, 대금수령 등 업무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미리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1조)

- 자체영업 및 입점업체 영업 미구분·표시,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공급·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을 거래당사자로 오인하게 한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소비자 손해 발생 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22조)
- 개인 간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개인 간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이용을 권고하도록 하고, 특히 개인 간 거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전자상거래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한편, 개인 간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판매자 이외 판매사업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개인판매자와 판매사업자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 간 거래에서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함(안 제26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2021. 6. 2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도 재편되고 있음
- 하지만 현행법은 전통적 통신판매를 전제로 설계되어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거래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율체계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또한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별도 규율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중국·일본 및 EU 등에서는 이와 관련한 입법도 본격화되고 있기에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정의하고, 이 중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중개, 연결수단 제공, 전자게시판 제공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함(안 제1조부터 제28조까지)
- 리콜명령 대상자의 리콜의무 이행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중앙·지방정부가 리콜명령 등 발동 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직접 리콜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및 제26조)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건수 중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구조의 특성 상 소비자·플랫폼·입점업체의 3자가 관련된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화된 분쟁조정 기구가 필요하므로, 한국소비자원에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조정을 전담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48조까지)

- 전자상거래에서의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는 동시다발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송비용 및 소송기간 등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이유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안 제56조 및 제57조)
- 사기사이트 폐쇄 등 다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서 임시중지명령제도는 그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므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명백한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로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법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표시·광고의 중지·삭제, 청약철회 방해 문구의 삭제, 사이트 내 경고 문구의 게시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58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2021. 6. 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이유

- 뉴스 형식을 빌어 허위정보를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나 뉴스 형식은 아니지만 사실을 조작하여 만든 허위·조작·과장정보가 생산·유통될 경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단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전파되어 그 파급속도가 빠르고 전파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음
- 가짜뉴스나 허위·조작·과장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등 사회 혼란을 야기하거나 개인이나 단체·조직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소지가 큰 불법적 행위임
- 이러한 언론의 불법적 행위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헌법 제21조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고,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음
- 우리 국민 대다수는 가짜뉴스나 허위·조작·과장정보 유통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고,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킬 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온·오프라인상의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 단순한 오보(誤報)가 아닌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시켜 개인이나 단체·조직 등에 대해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6. 1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지능정보사회윤리”를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정의하면서 정부는 이에 필요한 준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에 지능정보기술이 구현된 시스템 또는 기기가 반윤리적인 데이터 학습을 통하여 인종차별이나 혐오 발언 등과 같은 물의를 일으켜 공급자가 그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던 바 윤리적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실효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주요내용

-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개발자·공급자·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 원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함)을 제정하여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준칙의 준수 현황을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윤리적 검증에 필요한 장치들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해외 입법 동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에 관한 개정 권고 승인(2021. 5. 31.)

OECD 각료이사회(Council)는 각 회원국이 온라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디지털 환경의 아동에 관한 권고¹⁾」를 승인(2021. 6. 9.)

▶ 개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는 지난 2012년 2월 채택되었던 「온라인상에서의 아동 보호 권고²⁾」를 약 9년 만에 개정
 - (배경) 최근의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유해 콘텐츠, 사생활 침해 등 온라인상에서 유해한 환경에 대한 아동의 노출이 증가하고 급증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이 아동을 위한 교육 및 사회활동의 장이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권고의 개정이 필요했던 상황
- 이번 권고안은 다양한 전문가 그룹(▲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국제 전문가 ▲관련 국제기구·지역기구의 대표자 ▲OECD 실무진 등)이 참여하여 최근 4년간(2017년 -2021년) 광범위한 분석 작업과 협업을 통해 만들어짐
 - 권고가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국제적 협력과 정부 차원에서의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
- 한편,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Digital Service Provider)³⁾가 아동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권고에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둠

1)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Children in the Digital Environment

2) The Recommenda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Online. 2012년 2월 16일, 당시 정보 컴퓨터 통신 정책 위원회(the 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 현재, 디지털 경제 정책 위원회(the Committee on Digital Economy Policy, CDEP)) 의 제안에 따라 OECD 각료이사회에서 채택함

3) 제품 또는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법인 또는 자연인을 의미

▶ 주요내용

- (목표) 「디지털 환경의 아동에 관한 권고」는 아동을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디지털 환경이 제공하는 기회와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 사이의 균형을 목표로 함
- (내용) 권고 본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분	세부 내용
아동을 위한 안전하고 유익한 디지털 환경 보장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가장 근본적인 가치로 인식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책 설정 및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공공 및 민간 조직에 모두 적용 • 이익-위험 간 균형을 맞추는 범위에서 아동의 이익과 기회를 최대화하고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함 • 부모 또는 보호자는 아동의 이익을 최적화하고 위험을 감소시키는 기본적 역할 수행 • 안전·유익한 디지털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 부모, 보호자를 포함 이해당사자의 협력, 참여 및 역할 수행을 장려
중요 정책 프레임워크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유익한 디지털 환경 보장 원칙'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 정책 프레임워크를 정부에 권고 • 효과적인 법적 조치의 수정, 개발 및 검토 진행 • 아동의 디지털 이해력(digital literacy) 증진 촉구 • 책임 있는 사업행위를 통해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안전 제공 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 권고
국제적 협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이익 유지에 전념하는 국내 조직의 국제 네트워크 강화 장려 • 디지털 환경의 아동에 관한 국내 정책 정보 공유 및 국제적으로 상호 비교 가능한 지표를 제공하는 통계 프레임워크의 개발 장려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별도의 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는 다른 이해당사자와 다름을 인지하고, 관련 규정과 상기 원칙에 상응한 최선의 사업 방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권고 •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 아래 별도로 마련한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서비스 설계 및 제공 시, 예상 가능한 아동의 위험성을 고려할 것 - 연령에 적합한 언어를 통해 효과적인 정보제공 및 투명성을 보장할 것 -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아동 개인정보의 상업적 사용에 관한 보호 및 예방 조치를 수립할 것 - 아동의 이익 증진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국내 규정 및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해 입증 책임을 질 것

- (시행 방안 및 계획) OECD 디지털 경제 정책 위원회(CDEP)는 권고의 시행을 위해 실무 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며, 또한 각국 정부가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고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비교 지표 및 방법론 등 공통 통계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예정

- 2026년경 「디지털 환경의 아동에 관한 권고」의 이행, 보급 및 타당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

▶ 시사점

- OECD가 9년 만에 개정 「디지털 환경의 아동에 관한 권고」를 승인한 것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강력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됨
 - 최근 몇 년 간의 디지털 환경의 극적 변화로 섹스팅(sexting)⁴⁾ 및 가짜 뉴스와 같은 아동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의 증가가 이어지는 상황
- 한편, 디지털 환경의 변화 양상과 속도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조치와 대응이 OECD의 예상과 계획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음

※ Reference

<https://oecd-innovation-blog.com/2021/06/01/oecd-recommendation-children-digital-environment-online-safety-risks/>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389%20>

<https://www.oecd.org/sti/ieconomy/protecting-children-online.htm>

4) 섹스(sex)와 문자전송(text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으로 누드사진 등 음란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뜻함. 미국 고등학교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해외 입법 동향

미국 연방 상원, 사이버범죄 대응 강화 위한 「국제 사이버범죄 방지법(안)」 재발의(2021. 6. 17)

미국 연방 상원이 사이버범죄 이용 기기 및 자산에 대한 몰수·봇넷 폐쇄 등의 강경한 조치 권한을 법무부에 부여하기 위한 「국제 사이버범죄 방지법(안)」¹⁾을 재발의 (2021. 6. 17)

▶ 개요

- 미국 연방 상원이 핵심 인프라를 겨냥한 사이버범죄 대응 강화책으로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국제 사이버범죄 방지법(안)」을 발의
 - 이번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각 2인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성격의 법안으로 2018년 7월 연방 상원에서 발의되었으나 회기 경과로 폐기된 후 2021년 6월 재차 발의됨
- 「국제 사이버범죄 방지법(안)」은 국가 핵심 인프라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범죄에 활용된 기기 및 자산의 몰수와 같은 강력한 형사 처벌조항을 규정
 - 또한, 감염된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봇넷에 대한 폐쇄 조치 명령 권한을 법무부에 부여

▶ 주요내용

- (전제범죄(Predicate Offenses)²⁾의 범위 확대) 불법 도청기기 사용은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컴퓨터사기남용법(CFAA)³⁾」 위반행위는 「조직범죄법(RICO)⁴⁾」의 전제범죄로 각각 인정하는 등 전제범죄의 범위를 확대(제2절)

1) International Cybercrime Prevention Act of 2021

2) 큰 범죄를 구성하는 구성요소격 범죄. 따라서 범죄대상이 될 수 있는 수익을 발생시킨 범죄도 이에 해당. 일례로 자금세탁의 경우, 자금세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법상의 제반 범죄들을 포괄하는 의미

3)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컴퓨터에 대한 인허가 없는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1986년에 입법된 사이버보안 관련 법

4) Racketeering Influenced and Corruption Organization Act. 1970년 마피아와 같은 조직범죄를 소탕하고자 입법된 법으로, 현재는 화이트 칼라 범죄와 같은 복잡한 금융사기 문제, 뇌물수수 등의 공무원들의 부패문제, 사이버범죄 등의 위법행위들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기능

- 동 조항은 정교화되고 있는 사이버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
- (몰수(Forfeiture) 허용) 불법 도청기기, 스파이웨어 판매 대금 및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된 자산에 대한 몰수를 허용(제3절)
 - 현행법을 통해서도 이러한 범죄를 모두 처벌할 수 있으나, 동 조항을 통해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범죄에 사용된 도구와 이로 인해 발생된 자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취지
- (봇넷 폐쇄 권한) 멀웨어에 감염된 컴퓨터 네트워크 기기의 집합체로서 해커의 통제를 받는 '봇넷'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 및 집행 권한을 강화(제4절)
 - 법무부는 현행법 하에서 사기 또는 불법 도청과 관련된 봇넷 폐쇄를 위한 '침해금지명령(injunctive relief)⁵⁾' 발동 권한이 제한적
 - 이 조항은 데이터 유실, 서비스거부공격(Denial of Service Attack) 및 기타 「컴퓨터사기남용법」 위반 사례들을 포함한 다양한 불법적 행위에 연루된 봇넷에 대한 폐쇄를 법적으로 보장
- (가중 처벌) 댐, 발전소, 병원, 선거 인프라 등 핵심 인프라 시스템을 제어하는 컴퓨터에 고의적으로 피해를 유발시키기 위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중(제5절)
- (봇넷상의 밀매 단속) 판매자는 구매자가 컴퓨터에 손상을 입히려고 한다는 것을 알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손상된 컴퓨터에 대한 '접근 수단(means of access)' 판매를 금지(제6절)
 - 동 조항은 봇넷 내 손상된 컴퓨터에 대한 접근권을 판매하는 사이버범죄자를 대상으로 함
 - 봇넷을 이용한 범죄자들은 추가적으로 악성 소프트웨어를 로딩하거나, 서비스공격거부로 손상된 컴퓨터를 확인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접근권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음
 - 현행법 하에서는 판매자가 컴퓨터를 손상시킨 사람이 아닐 경우 손상된 컴퓨터에 대한 접근권을 판매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동 조항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로 풀이

▶ 평가

- 최근 미국에서 중요 네트워크 및 핵심 산업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공격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동 법안 재발의의 추진 동력으로서 작용

5)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방지와 보호를 위해 어떤 행위를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 이러한 명령의 조치를 injunctions로 일컫음

-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 연방 차원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강경한 봉쇄 정책이 연이어 나오며, 미국 연방 의회도 이와 보조를 맞추는 양상
 - 바이든 대통령은 국외發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 군사적인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⁶⁾된 바 있음
 - 연방 의회도 바이든 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응하여 지난 5월 하원에서 「파이프라인 법(안)⁷⁾», 「CISA 사이버훈련 법(안)⁸⁾」이 잇달아 발의⁹⁾
 - 이와 같은 미국의 기조가 당분간 계속되어, 향후 미국 의회에서 사이버범죄 및 보안 대응 관련 입법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

※ Reference

<https://www.whitehouse.senate.gov/imo/media/doc/International%20Cybercrime%20Prevention%20Act%20of%202021%20Section-by-Section.pdf>

<https://thehill.com/policy/cybersecurity/558982-senators-unveil-legislation-to-crack-down-on-cyber-crimes?rl=1>

<https://www.whitehouse.senate.gov/news/release/whitehouse-graham-blumenthal-tillis-reintroduce-legislation-to-fight-cybercrime->

<https://www.healthcareitnews.com/news/senators-introduce-bipartisan-bill-fight-cybercrime>

<https://www.ipwatchdog.com/2021/06/22/reintroduced-international-cybercrime-prevention-act-create-new-cybercrime-violations-increase-forfeiture-injunctive-relief/id=134814/>

6) ABC News, 'This Week' Transcript 6-6-21: Secretary Gina Raimondo & Nick Clegg, 2021.6.7.

7) Pipeline Security Act, 2021.5.11

8) CISA Cyber Exercise Act, 2021.5.14

9) [2021년 5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4호 참고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대통령, 미국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적대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 서명(2021. 6. 9.)

미국 대통령은 전 정부의 기존 행정명령 폐기 및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의 보안문제 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¹⁾에 서명 (2021. 6. 9.)

▶ 개요

- 미국 대통령은 특정 소프트웨어를 금지한 전 정부의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공급망 관련 보안문제 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동 행정명령은 틱톡, 위챗 및 8개의 통신·금융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²⁾을 대상으로 한 전 정부의 행정명령³⁾의 폐기 및 미국의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의 안전에 관한 행정명령⁴⁾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위한 것
 - 이전 행정명령의 추가적 조치로써 ▲적대국⁵⁾의 정보 활동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악의적 사이버활동에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또는 민감한 정보⁶⁾를 수집하는 애플리케이션과 같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기준을 제공 ▲미국의 민감 정보를 지속 보호하기 위해 상무부에 적대국의 위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

▶ 주요내용

① 전 정부의 기존 행정명령 폐기

- 틱톡(Tiktok)의 사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942, 2020년 8월 6일),

1) Executive Order on Protecting Americans' Sensitive Data from Foreign Adversaries, 2021. 6. 9
 2)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Alipay, CamScanner, QQ Wallet, SHAREit, Tencent QQ, VMate, WeChat Pay, WPS Office
 3) 해당 행정명령은 2020년 8월 6일자 행정명령 제13942호 (Executive Order 13942, Aug 6, 2020). 같은 날 행정명령 제13943호 (Executive Order 13943, Aug 6, 2020), 2021년 1월 5일자 행정명령 제13971호 (Executive Order 13971, Jan 5, 2021) 등 총 3건
 4) 2019년 5월 15일자 행정명령 제13873호 (Executive Order 13873, May 15, 2019)
 5) 본 행정명령에서는 적대국(Foreign Adversary)의 정의를 이전 정부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873, May 15, 2019)의 것을 따름. 적대국이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 경제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는 국가를 의미하며, 이전 행정명령에서는 이런 국가의 예로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Nocholas Maduro) 정권 등을 들고 있음
 6) 민감한 정보에는 개인 식별 정보, 개인 건강 정보, 개인 유전자 정보 등이 있음

위챗(WeChat)의 사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943, 2020년 8월 6일), 중국에서 개발된 8개의 통신·금융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971, 2021년 1월 5일)을 취소

② 이전 행정명령에 대한 추가적 조치

- 미국의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안전에 관한 2019년 5월 15일의 행정명령⁷⁾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상무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의 수집, 처리, 전달이 가능한 휴대통신 장비, 태블릿 컴퓨터,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이들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함
 - 단, 대상 애플리케이션은 적대국의 사법권의 영향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이 설계, 개발, 생산, 공급한 것이어야 함
- 적대국에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식별하는 위협 지표 제시

구분	내용
국가안보 위협 식별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대국의 군사 및 정보 활동 또는 (무기·위협 등의) 확산 활동(proliferation activities)을 지원하는 사람이 소유, 통제 또는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인지 여부 • 국가 또는 기업의 민감 정보 또는 기밀 정보에 대해, 적대국의 접근을 포함한 감시 또는 스파이 활동 수행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인지 여부 • 적대국으로부터 강요받거나 지명된 사람이 소유, 통제 또는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인지 여부 •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관련된 사람이 소유, 통제 또는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인지 여부 •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애플리케이션의 철저한 감사가 부재한지 여부 • 수집된 데이터의 범위와 민감성 •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수와 민감성 • 식별된 위협이 독자적으로 검증 가능한 조치를 통해 처리되었거나 처리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

- (행정명령의 시행) 연방정부 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정부부처 및 상무부는 다음과 같이 동 행정명령을 시행해야 함
 - 연방정부 관리예산국과 정부부처의 장관들은 폐지 대상 행정명령 및 이와 관련한 규정, 권고사항, 정책의 폐지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
 - 상무부는 국무부, 검찰총장, 국방부, 국토안전부, 국가안보국 및 기타 행정부처와 협의하여 동 행정명령

7) Executive Order 13873 on 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 May 15 2019.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적대국과 정보통신 기술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 해당되는 특정 국가 또는 기업을 명시하지는 않음

서명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적대국으로부터 미국 국민의 민감한 정보 보호를 위한 권고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가안보국에 제출할 것

- 상무부는 국무부, 검찰총장, 국방부, 국토안전부, 국가안보국, 관리예산국 및 기타 행정부처와 협의하여 동 행정명령 서명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적대국의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한 위험을 설명하기 위한 추가적 법적, 행정적 조처의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가안보국에 제출

▶ 시사점

-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2월 백악관 언론담당 비서의 미국의 데이터, 정보보안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
- 동 행정명령이 폐지한 이전의 행정명령들은 이미 연방법원에서 기각된 건으로서 실효성이 없는 것들임
 - 단, 이전 행정명령이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협소하게 적용하려 했던 것을 동 행정명령에서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내용상으로는 이전 행정명령의 폐기보다 오히려 강화된 조치이면서 확정성·실효성 높은 효과 예상
 - 이전 행정명령⁸⁾ 중에서도 용어의 정의, 사이버보안의 목적 등을 그대로 활용한 점과 틱톡에 대한 정부의 별개의 검토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관련 논평도 이를 증명

※ Referenc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6/09/executive-order-on-protecting-americans-sensitive-data-from-foreign-adversaries/>

<https://www.jdsupra.com/legalnews/new-e-o-revokes-tiktok-and-wechat-6409710/>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715c5e0c-9e4f-4b6e-b5ed-bb24d4c0309b>

<https://thehill.com/policy/technology/557523-biden-replaces-trump-executive-orders-targeting-tiktok-and-wechat?rl=1>

<https://www.jdsupra.com/legalnews/beyond-tiktok-and-wechat-how-biden-s-9588917/>

8) Executive Order 13873on 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 May 19, 2019

해외 입법 동향

미국 NIST, AI 시스템 신뢰도 측정을 위한 보고서 초안 공개(2021. 5. 19)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다양한 활용 목적과 맥락에 기반하여 AI 시스템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다룬 보고서 초안¹⁾을 발표 (2021. 5. 19)

▶ 개요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인공지능(AI) 시스템의 신뢰도 측정을 모델링화하기 위한 초안 보고서를 발간
 - 이번 보고서는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다양한 유형의 AI 시스템을 이용할 때의 사용자 신뢰도를 정량화하고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NIST는 최종 권고안 수립 전까지 산업계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키로 함²⁾

▶ 주요내용

- (신뢰도 측정 방법) 초안 보고서는 신뢰성(trustworthiness) 평가를 위해 AI에 대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 신뢰도에 기여하는 9개의 요인(특성)을 활용
 - 9개 요인에는 정확성, 신뢰성, 복원력, 객관성, 보안성, 설명가능성, 안전성, 책임성, 프라이버시 등이 포함³⁾
 - 보고서에서는 개인이 AI 작업의 성격과 AI 결정에 따른 위험을 다르게 정의(인식)할 경우 9개 요인별 측정치를 어떻게 달리 평가하는지에 주목

1) NIST, NIST Proposes Method for Evaluating User Tru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2021.5.19

2) 초안 보고서에 대한 의견 수렴은 2021년 7월 말까지를 기한으로 함

3) 2019 NIST U.S. Leadership in AI 보고서와 NISTIR 8074 Volume 2에 상세 내용이 수록

〈 AI 시스템의 신뢰도 평가 요인 〉

신뢰도 특성 (Trustworthy Characteristic)	의미 및 주요 특징
정확성(Accuracy)	• AI 시스템 성능 지표로, 인지되는 정확성은 특정 목적별 AI 시스템의 품질에 따라 상이
안정성(Reliability)	• 특정 시간대 동안의 정해진 조건 하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의 능력 (ISO/IEC 27040:2015 정의 참조)
복원성(Resilience)	• 복잡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AI 시스템이 적응하는 능력 또는 시스템 장애 기간이나 AI 시스템에 미치는 여파를 줄일 수 있는 능력
객관성(Objectivity)	• 위변조되지 않은 정제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AI 시스템
보안성(Security)	•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물리 및 논리적인 보안 기법을 활용하는 정보보안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	• 사람이 AI 시스템의 결과를 이해하는 방식
안전성(Safety)	• 사람에게 물리적인 상해를 유발시키지 않고 동작할 수 있는 시스템의 조건
책임성(Accountability)	• 특정 활용 사례와 관련된 이벤트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추적성(traceability)
프라이버시(Privacy)	•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공유, 저장 및 폐기 등과 관련된 고려사항

○(AI 시스템별 상이한 신뢰도) 개인은 자신이 AI 시스템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지와 해당 활용 용도와 관련된 위험 수준에 따라 9개 요인에 대한 평가를 상이하게 내릴 수 있음

- 보고서에 언급된 AI 사례로서 위험도가 낮은 애플리케이션인 ‘음악 선곡 알고리즘’과 위험도가 높은 애플리케이션인 ‘암진단 AI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신뢰도는 각각 달리 나타날 수 있음
- 즉, 사용자는 프로그램별로 9개 요인에 대한 상이한 평가치를 할당함으로써, 위험도가 낮은 음악 선곡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암진단을 위한 의료 어시스턴트 AI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
- 일례로, ‘정확성’ 요인의 경우, 음악 선정 알고리즘은 청취자가 주로 듣던 음악 장르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음악을 기대하거나 늘 듣던 곡을 건너뛰어 듣는 등의 활용 특성과 패턴으로 인해 낮은 수준의 정확도로 충분한(충분성값=0.0450) 반면, 작업 수행 시 생명의 위험이 수반되는 암진단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필요로 함(충분성값=0.090)

〈 AI 시스템의 신뢰도 특성값에 대한 사용자 기대치(충분성값) 비교 결과: 의료 AI & 음악 선곡 AI 〉

신뢰도 특성	의료 AI		음악 선곡 AI	
	특성값	충분성값	특성값	충분성값
정확성	90%	0.090	90%	0.0450
안정성	95%	0.095	95%	0.0475
복원성	85%	0.085	85%	0.0425
객관성	100%	0.100	0%	0.000
보안성	99%	0.099	30%	0.150
설명가능성	75%	0.075	2%	0.010
안전성	85%	0.085	5%	0.025
책임성	0%	0.000	0%	0.000
프라이버시	80%	0.080	0%	0.000

※ 특성값(characteristic value): AI 시스템별 신뢰도 요인 충족치

충분성 값(sufficiency value): AI 시스템의 활용 맥락과 위험을 근거로 하여 충분한 수준의 측정값. 의료 AI와 음악 선곡 AI는 각각 위험도를 9와 2로 설정(10이 가장 높은 위험도)했으며, 특성값/위험도에 따라 측정값 산출

▶ 평가

- 이번 보고서는 AI 시스템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표준에 앞서 활용 목적과 맥락에 따라 사용자 측면에서 신뢰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입각해, 향후 AI 신뢰도 제고 및 관련된 모델링 작업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
-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산업계는 물론 인지 심리 분야 등의 다양한 학제간 협력을 통해 AI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Reference

<https://www.nist.gov/news-events/news/2021/05/nist-proposes-method-evaluating-user-trust-artificial-intelligence-systems>

<https://www.dwt.com/blogs/privacy-security-law-blog/2021/06/nist-ai-trust-report>

<https://www.jdsupra.com/legalnews/nist-issues-draft-report-on-trust-and-4303122/>

해외 입법 동향

영국 정부,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의 규제를 강화한 「온라인 안전법(안)」 공개(2021. 5. 12.)

영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내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사와 규제 기관의 의무를 규정한 「온라인 안전법(안)」을 발표 (2021. 5. 12.)

▶ 개요

-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가 온라인 콘텐츠 규제와 웹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 초안 성격의 「온라인 안전법(안)(Draft Online Safety Bill)」을 공개
 - 동 법안은 온라인 상의 인종 차별, 사기, 테러리즘 및 아동 성착취 등의 유해 콘텐츠 근절을 목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를 두 가지의 범주(category)로 구분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통 및 상이한 규정을 제시
 - 해당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들은 영국 통신 및 인터넷 규제 기관인 커뮤니케이션청(The Office of Communications, 이하 Ofcom)의 관리 하에 콘텐츠 관련 의무 이행 및 세이프가드 의무 이행을 감독을 받게 됨

▶ 주요내용

① 적용 대상

- 「온라인 안전법(안)」은 다음의 두 가지 카테고리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에 대한 관리 의무를 규정
 - (카테고리 1) 사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소셜 미디어 기업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호스팅하고 ‘사용자 대 사용자(user-to-user)¹⁾’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급업체 역시 이에 해당
 - (카테고리 2) 사용자가 여러 웹 사이트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엔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1) 콘텐츠가 서비스 사용자에게 의해 생성, 업로드, 공유됨으로써 서비스 내의 다른 사용자들이 이를 접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인터넷 서비스를 의미

- 상기 카테고리별 기업에 대한 세부 규정 적용 조건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으로, 영국 사용자 수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의 영향력과 연관된 요소들을 검토하여 제공 서비스의 관리 의무를 차등적으로 규정할 것으로 예상
- 「온라인 안전법(안)」은 영국 이외의 지역에 기반을 둔 서비스가 영국의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의무 대상 사업자로 인정하고 있음
- 한편, 동 법안은 사용자에 대한 위험이 낮은 특정 유형의 제공자와 뉴스 발행사(news publisher)의 웹사이트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함

② 대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의 의무

- (콘텐츠) 규제 대상 콘텐츠는 ‘불법(illegal)’ 콘텐츠와 ‘유해(harmful)’ 콘텐츠로 구성 각각에 따라 상이한 의무가 부과
 - (공통) 불법 및 유해 콘텐츠에 어린이가 접근할 가능성에 대비해 특별 평가²⁾를 수행하고 부가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함
 - (불법 콘텐츠) ▲유해성 완화 및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콘텐츠를 최소화하고 사용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며 ▲불법 콘텐츠 위험 평가(risk assessment)를 수행해야 함
 - (유해 콘텐츠) ‘사용자 대 사용자’ 서비스 제공사의 경우 유해 콘텐츠로부터 성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사용자에 의해 발생된 사기 행위에 대한 관리 의무도 포함
- (세이프가드) 커뮤니케이션청(Ofcom)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 예정인 ‘실천 규약(code of practice)’과 함께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는 다음의 세이프가드 의무를 준수해야 함

구분	내용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의 준수 의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 • 민주주의 수호에 필요한 영국 정치 뉴스와 같은 콘텐츠 및 저널리즘 콘텐츠 보호(‘카테고리 1’ 대상 사업자에 국한) • 상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영향력 평가(impact assessment) 수행(‘카테고리 1’ 대상 사업자에 국한) • 콘텐츠 보고 시스템 및 불만처리 절차 유지 관리 • 위험 평가 및 조치 기록(실천 규약 내 미포함 사항) 준수

③ 규제 기관의 의무와 권한

2) ▲어린이층을 포함한 사용자 수 ▲서비스 내 유해 콘텐츠들이 어린이 사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 수준 ▲연령대별 유해 콘텐츠의 위험 수준 ▲어린이 유해 콘텐츠 전파를 촉진하는 서비스 기능의 위험 수준 ▲어린이들이 겪게 될 수 있는 위험의 속성과 심각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커뮤니케이션청(Ofcom)은 「온라인 안전법(안)」에 규정될 주요 규제들을 전담할 기관으로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를 요구하고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권한을 갖게 됨
 - 모든 규제 대상 제공사의 등록부를 관리하고, 규정 준수를 돕기 위한 실천 규약 제정
 - 제공사들은 불법 콘텐츠와 관련하여 실천 규약을 따를 경우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완화
- 위반 시 제재수단으로서 동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연매출의 10% 또는 1,800만 파운드 중 높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 또한, 커뮤니케이션청(Ofcom)은 ‘기술 활용 통지문(Use of Technology Notices)’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콘텐츠 제거 기술 활용, 정보 요청을 따르지 않는 임원진에 대한 형사 제재 발동 및 서비스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서비스 제한 명령 요구까지 가능
 - 다만, 형사 제재의 경우 법 발효 이후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실시할 예정

▶ 전망과 평가

- 「온라인 안전법(안)」 발표에 앞서 EU집행위원회는 콘텐츠 제거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된 「디지털 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을 공개한 바 있으나, 이번 영국 법안은 상대적으로 EU 법안 대비 보다 엄격한 규제로 평가
 - 특히 규제 강도가 높은 ‘카테고리 1’의 경우 거대 사업자를 주로 겨냥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법(안)」과는 달리 ‘사용자 대 사용자(user-to-user)’ 서비스까지 포괄적으로 규제 대상 사업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법 적용 대상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한편, 영국과 EU 규제의 차이로 인해 관련 기업의 규제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

※ Referenc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85033/Draft_Online_Safety_Bill_Bookmarked.pdf

<https://www.mofo.com/resources/insights/210601-uk-publishes-draft-online-safety.html>

<https://www.jdsupra.com/legalnews/uk-government-publishes-full-response-2380339/>

해외 입법 동향

영국 정부, 공공부문의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 사용에 관한 프레임워크 공개(2021. 5. 13.)

영국 정부는 공공부문의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자동화 의사결정을 위한 윤리, 투명성, 책임성 프레임워크'¹⁾를 발표 (2021. 5. 13.)

▶ 개요

- 영국 정부의 내각실²⁾, 인공지능청³⁾, 중앙 디지털 데이터청⁴⁾은 공공부문에서의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 사용을 위한 윤리, 투명성, 책임성 프레임워크를 발표
 - 동 프레임워크는 인공지능 활용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영국 공공부문이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영국 정부의 원칙 천명
 - 정부 내에서 기술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윤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총 7가지 준수사항을 설정

▶ 주요내용

- (적용 대상)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은 자동화 의사결정의 사용 정도에 따라 완전한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Solely automated decision-making)과 부분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Automated assisted decision-making)으로 구분되며, 프레임워크는 두 종류의 시스템 모두에 적용
 - 완전한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은 사람의 판단과 결정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일정하고 반복적인 성격의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⁵⁾을 의미
 - 부분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은 사람의 판단과 결정을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자동화 의사결정

1) Ethic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ramework for Automated Decision-Making

2) Cabinet Office

3) The Offic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4) Central Digital and Data Office

5)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에서는 종업원의 생산성에 따른 급여 지급을 위한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의 예로 제시함

시스템⁶⁾으로 좀 더 복잡하고 심각한 영향을 주는 내용에 해당

○(세부 내용) 자동화 의사결정을 위한 윤리, 투명성, 책임성 프레임워크의 7가지 항목 및 그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

항목	세부 내용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하기 위한 테스트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 가동 전에 전문가의 테스트를 거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피하고 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 • 위험·영향 평가의 정기적 시행 및 “레드 팀⁷⁾ 테스트”의 운영 등 구체적 실행 방법 제시
모든 사용자와 국민에게 공정한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고리즘이 인종, 성별, 종교, 빈부, 정치성향 등의 편향을 인식하여 불공정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것 • 이런 편향을 줄이고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류의 그룹과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를 시스템 개발에 참여시킬 것 • 본 항목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⁸⁾과 「공공부문에서의 평등 의무 규정(Public Sector Protection Duty)」⁹⁾에 따른 “평등 영향 평가 (Equality Impact Assessment)¹⁰⁾”를 반드시 시행할 것
분명한 책임소재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고리즘과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은 감사가 가능하고 책임 소재가 분명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 개인과 기관은 인공지능의 적절한 기능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짐 • 공공부문에서는 부처의 장관을 대신해 일 단위 업무의 결정권을 진 공무원에게 전적인 책임 소재를 부여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 및 국민의 이익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고리즘과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다루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데이터 보호 관련 법령¹¹⁾을 준수하도록 함 • 데이터 보호 관련 법령에서 제시한 7가지 주요 원칙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목적의 제한 ▲데이터 최소화 ▲데이터의 정확성 ▲데이터 저장의 제한 ▲데이터 통합과 보안 ▲책임성)이 알고리즘에 구현되도록 할 것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의 영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 향상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 의사결정이 활용된 모든 절차와 서비스에 대해 쉬운 언어로 국민에게 공지하도록 함 •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에 따른 사건 사례를 공유하여 해당 분야에서 전반적 개선을 유도 •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국민의 질의에 실시간 대응하도록 함
법률 준수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이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정부부처의 법적 자문을 사전에 얻도록 함 •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과 「공공부문에서의 평등 의무 규정(Public Sector Protection Duty)」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 • 데이터 및 법규 등이 변경될 경우 이를 적절히 반영하도록 할 것
미래 대비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고리즘과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이 모든 정책의 해법이 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시스템이 의도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 • 최소 분기별로 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검토하고 정책의도의 유지를 검토하며 새로운 위험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6) 동 감독기구에서는 종업원 군대에 따른 경고 여부의 결정을 부분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의 예로 제시함
 7) Red Team.약점을 공격해 개선 방안을 찾아내는 역할을 부여받은 팀. 조직 내부의 전략 수립에 개입되지 않은 독립적인 팀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그 과정에서 취약점을 발견 되짚어보기를 실행. 군대, 기업, 정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됨
 8) 2010년 제정된 영국의 차별 금지법. 개인서비스, 의료, 공공부문, 고용 등 영역에서 연령, 인종,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음
 9) 「2010년 평등법」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으로 차별 금지의 구체적 의무 조항을 담고 있음
 10) 「2010년 평등법」에서 정한 연령, 인종, 성별 등의 차별 금지 대상이 정부정책, 과제, 제도 등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평가 방식
 11)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데이터 윤리 프레임워크 (Data Ethics Framework)」 등

▶ 시사점

- 이번 프레임워크는 첨단 기술 관련 규정에 대한 불신¹²⁾ 및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부 지침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발표됨
 - 현재의 지침이 너무 장황하고 복잡하며 추상적이라는 문제와 함께 공공부문 종사자와 정부기관에 명확한 정보와 실질적 시행 절차를 제공하여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력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고 있던 상황
- 이번 프레임워크는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이 복잡하며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있어서 완전한 해결책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음
 - 이런 위험성을 감소 또는 방지하고자 정부차원에서 명확한 지침이 필요했으며 이번 발표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 관련 법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

※ Reference

<https://www.computerweekly.com/news/252501088/UK-government-publishes-framework-on-automated-decision-making>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thics-transparency-and-accountability-framework-for-automated-decision-making/ethics-transparency-and-accountability-framework-for-automated-decision-making>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9c685421-7873-4954-89af-efe9b23ffc45>

https://www.beuc.eu/publications/beuc-x-2020-078_artificial_intelligence_what_consumers_say_report.pdf?utm_source=POLITICO.EU&utm_campaign=5a7d137f82-EMAIL_CAMPAIGN_2020_09_09_08_59&utm_medium=email&utm_term=0_10959edeb5-5a7d137f82-190598416

<https://www.bcs.org/more/about-us/press-office/press-releases/the-public-dont-trust-computer-algorithms-to-make-decisions-about-them-survey-finds/>

12) 2020년 발표된 EU 소비자 설문 조사(Artificial Intelligence:what consumers say)가 EU 소비자들이 첨단 기술 관련 규정에 많은 불신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해외 입법 동향

호주 의회, 온라인 사용자 안전을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한 「온라인 안전법」 통과(2021. 6. 22)

호주 의회가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수립과 부처의 역할 및 적용 대상이 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 등을 규정한 법안¹⁾을 확정 (2021. 6. 22)

▶ 개요

- 호주 연방 상·하원이 사이버폭력 피해 방지와 온라인 안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안전법」을 통과시킴
 - 동 법은 2021년 2월 하원에서 발의되어 3월 통과와 함께 상원으로 전달됐으며, 6월 3차 독회를 끝으로 최종안을 확정
 - 이번 법은 기존 법제와의 조화로운 규제 체계를 위해 「온라인 안전 강화법(EOSA²⁾)」을 대체하고, 형사법(Criminal Code Act) 등의 일부 조항³⁾들을 개정
 - 「온라인 안전법」은 왕실 승인(Royal Assent)을 남겨두고 있으며, 승인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효될 예정
-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최종사용자의 온라인 안전 보호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
 - 동 법은 집행권한을 ‘e안전 위원장(eSafety Commissioner)⁴⁾에게 부여함과 동시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들에 대한 최종사용자 보호 의무와 이들에 대한 관련 관리 감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
 - 이외 동 법은 온라인 유해 콘텐츠의 유형과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 삭제 요건 및

1) Online Safety Bill 2021

2) Enhancing Online Safety Act 2015

3) 폭력물 콘텐츠 호스팅 사업자의 콘텐츠 삭제를 의무화

4) e안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e안전 위원회는 2015년 7월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호주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으로부터 온라인 보호 업무가 독립하면서 별도의 조직으로 설립되었으며, 자금 지원은 호주통신미디어청으로부터 받고 있음

콘텐츠 접근 차단 대책 등을 제시

▶ 주요내용

- (적용 대상) 「온라인 안전법」은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사 ▲전자 서비스 관련 제공사 ▲지정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 ▲앱 배포 서비스 제공사 ▲호스팅 서비스 제공사 등을 대상으로 각종 의무를 적용

〈 「온라인 안전법 적용」 대상 사업자 〉

유형	정의	제공사 사례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사	• 최종 사용자 간의 온라인 소셜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	• Facebook, Instagram, TikTok, Snapchat, LinkedIn 등
전자 서비스 관련 제공사	• 최종 사용자가 다른 최종 사용자와 통신할 수 있는 전자 서비스 제공사	• Gmail, Outlook, WhatsApp, Xbox 관련 서비스 등
지정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	• 최종 사용자가 인터넷 제공 수단 또는 검색 엔진 등을 통해 개인에게 인터넷 자료 접근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사	• Google, Internet Explorer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	• 공공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제공 서비스 공급사로, 2명의 최종 사용자 간 자료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며, 각 최종 사용자 간 직원이나 파트너와 같이 공급사와 직접적인 관련성 ⁵⁾ 이 없는 경우	• Telstra, Optus 등
앱 배포 서비스 제공사	• 최종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앱 스토어 공급사	• Apple(iOS Apple Store) 및 Google (Google Play Store) 등
호스팅 서비스 제공사	• 소셜미디어, 관련 전자 서비스 또는 지정 인터넷 서비스 상에서 제공되는 저장 자료를 호스팅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사	• Amazon, Microsoft 등

출처: Lexology, 한국인터넷진흥원 편집 및 보완

- (규제 대상) 동 법은 다음을 포함한 특정 '온라인 유해 행위(online harms)'로부터의 보호를 강화

〈 「온라인 안전법」 규제 대상 〉

- 호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따돌림 게시물
- 호주 성인 대상 사이버 학대 게시물
- 나체 이미지에 대한 합의되지 않은 공유
- 등급 불가(Refused Classification) 콘텐츠 및/또는 18세 미만 관람 금지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노출
- 혐오스러운 폭력 행위(예: 테러리스트 행위, 살인, 살인 미수, 고문, 강간, 납치)를 묘사하는 콘텐츠

- (온라인 안전 보호 방안) 동 법은 온라인 유해 콘텐츠 게시물에 대해 ▲삭제 통지 ▲차단 통지 ▲기본 온라인 안전 기대치 충족 요구 등을 주요 대응책으로 삼고 있음

5) immediate circle, 호주 1997 통신법 제23절

〈 「온라인 안전법」의 온라인 안전 보호를 위한 방안 〉

온라인 안전 보호 방안	주요 내용
삭제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유해 콘텐츠에 대한 불만사항이 제기될 시 삭제 통지 시스템을 가동 'e안전 위원장'은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사, 관련 전자 서비스 제공사, 지정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 및 호스팅 서비스 제공사를 대상으로 삭제 통지문을 발송하여 24시간 이내에 제공되는 콘텐츠를 제거, 또는 이를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삭제 통지문 발송 대상 게시물의 조건은 ▲호주 최종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거나 ▲관련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에 대한 불만사항이 제기되거나 ▲불만사항 접수 후 온라인 서비스 공급사가 이를 삭제하지 않거나 ▲e안전 위원장에게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 등
차단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로 하여금 혐오스러운 폭력 행위를 묘사, 부추기거나 유도하는 콘텐츠에 대해 접근을 차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e안전 위원장에게 부여 차단 통지문 발송의 조건은 e안전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온라인상의 특정 콘텐츠가 호주 지역사회에 상당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등
기본 온라인 안전 기대치 충족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프라교통지역개발통신부⁶⁾ 장관이 규정한 '기본 온라인 안전 기대치(Basic Online Safety Expectations, BOSE)'를 소셜미디어 서비스, 관련 전자 서비스 및/또는 지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 BOSE는 기존의 「온라인 안전강화법(EOSA)」에서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사에 국한 적용되었던 '기본 온라인 안전 요건(basic online safety requirements)'을 강화한 준칙 BOSE의 주요 내용으로는 ▲최종사용자가 서비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 ▲특정 유형의 콘텐츠가 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도를 최소화할 것 ▲18세 미만 관람 금지 콘텐츠에 어린이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 ▲최종사용자가 특정 콘텐츠에 대해 신고하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명확하고 쉬운 메커니즘을 확보할 것 등이 포함

▶ 평가

- 영국의 유사 법안 「온라인 안전법(안)(Draft Online Safety Bill)」이 2021년 5월에 발표된 바 있으나, 소셜미디어와 검색 엔진 등 특정 유형의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 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⁷⁾
- EU의 「디지털 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을 비롯하여 최근 영연방 국가들 사이에서도 온라인 안전과 관련한 법률 제정 노력이 활발한 가운데, 법률 적용 대상과 관련한 동향과 국가별 법적 수립 맥락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

※ Reference

https://parlinfo.aph.gov.au/parlInfo/download/legislation/bills/r6680_first-reps/toc_pdf/21022b01.pdf;fileType=application%2Fpdf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27727553-25ee-4267-82c7-ecce835323cb>

6) The Ministry of Infrastructure, Transport, Regional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s

7) [2021년 6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5호 '영국 정부,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의 규제를 강화한 「온라인 안전법(안)」 공개' 참조

해외 입법 동향

일본 참의원, 디지털청 설립 및 소관 업무 등을 규정하는 「디지털청설립법」 통과(2021. 5. 12.)

일본 참의원이 디지털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청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청설립법¹⁾」을 통과(2021. 5. 12.)

▶ 개요

- 일본 참의원은 디지털사회 구현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설립 등을 규정한 「디지털청설립법」을 통과
 -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보조금 지급 혼란 등 행정의 디지털화 대응 지연으로 인한 취약점이 여러 분야에서 속속 드러난 상황에서, 기존의 행정 관행을 탈피하는 디지털 정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했던 상황이 주요 배경이 됨
- 「디지털청설립법」은 총 4장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제2장과 제3장에서 기관의 업무 및 조직구성 전반에 관해 규정

구분	내용
제1장	• 총칙(제1조)
제2장	• 디지털청의 설립 및 소관 업무에 대한 규정(제2조~제4조)
제3장	• 조직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청장 및 디지털청의 특별 직위에 대한 규정(제5조~제12조) (디지털청장, 내각총리대신의 권한, 디지털장관(디지털대신), 디지털부장관(부대신), 디지털차관(대신 정무관), 디지털감, 디지털심의관 등) - 디지털청의 일반 직위에 대한 규정 (제13조) - 디지털사회추진회의 구성 및 담당업무,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6조)
제4장	• 보칙 (제17조~제18조)
부칙	• 시행일 및 관련 법률의 일부 개정 등

1) デジタル庁設置法 (令和三年法律第三十六号)

▶ 주요내용

- (설립) 내각 조직으로 디지털청을 설립하며, 내각보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른 정부부처에 대한 강력한 권고 권한 등을 부여
- (역할) 관련 정책의 종합적 조정, 기본방침 수립 등의 기획 입안, 국가 등 정보시스템의 총괄·감리, 중요 시스템 정비 등을 담당
- (주요 업무) 크게 내각보조업무와 분담관리업무로 구분

구분	세부 내용
내각보조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사회 형성을 위한 정책의 기획 입안 및 종합적 조정
분담관리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사회 형성에 관한 중점계획 작성 및 추진 • 개인 식별번호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정책의 기획 입안 등 • 마이넘버·마이넘버카드·법인번호 이용에 관한 업무 및 정보제공 네트워크 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본인 확인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정책 기획 입안 등 • 상업등기전자증명(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본인 확인 절차), 전자서명, 공공 개인인증, 전자위임장에 관한 업무 • 데이터 표준화, 외부연계기능, 공공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종합적·기본적 정책의 기획 입안 • 국가·지방공공단체·준공공부문의 민간 사업자 정보시스템 정비·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의 작성 및 추진 • 국가가 실시하는 정보시스템의 정비·관리에 관한 사업 총괄감리, 예산의 일괄 계상 및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

- (조직) 디지털청은 정부조직체계에서 내각 직속으로 두고, 기관장을 내각총리대신으로 함
 - 기관장 이하의 특별 직위로서 디지털장관, 디지털부장관, 디지털차관, 디지털감, 디지털심의관을 둠

직위	담당 업무
디지털장관 (디지털대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총리대신을 지원하여 디지털청의 업무를 총괄
디지털부장관 (부대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장관의 지휘를 받아 정책 및 기획을 담당하고 정무를 처리
디지털차관 (대신정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장관을 지원하여 특정 정책 및 기획에 참여하고 정무를 처리
디지털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청 소관 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디지털장관에게 진언하고, 디지털장관을 도와 디지털청의 업무를 정리하며, 각 부서 등의 사무를 감독
디지털심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청 소관 사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무를 총괄 정리

- 전체 인원은 각 부처로부터의 정원 이체 및 신규 배정, 비상근 채용 등을 통해 500명 정도로 발족

- CTO(최고기술책임자), CDO(최고데이터책임자) 등을 두며, 민관 불문하고 적재적소에 인원 배치
- 디지털사회 형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정책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간 상호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디지털사회추진회의'를 설치

▶ 시사점

- 「디지털청설립법」은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돌입하며, 다양한 인재를 모아 기존 부처와는 차별화된 행정절차의 온라인화 등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
-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드러난 일본 정부의 행정상 취약점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반을 조기에 재구축하기 위한 동 법의 제정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
- 단, 신설되는 디지털청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의구심이 제기
 - 디지털청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책을 한 데 묶어 효율적이면서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조직으로 기대되나, '각 부처의 시스템 통일'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쉽게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
 - 예컨대, 디지털사회 형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업무의 온라인화를 진행하다 보면 보안·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디지털청설립법」 제4조²⁾와 「사이버보안 기본법」 제24조³⁾ 등을 비추어 볼 때, 해당 업무는 디지털청이 아닌 내각 소속의 '사이버보안 전략본부'가 맡게 될 것으로 판단됨
 - 디지털청은 법조문상으로는 '기획 입안', '종합 조정'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과 같이 '최강 부처'의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소관 사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제4조에서 '다른 부처 소관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등 향후 부처 간 업무조율이 쉽지는 않을 전망

※ Reference

<https://www.cas.go.jp/jp/houan/204.htm>

<https://www.digital.go.jp/about-us>

2) 디지털청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디지털청의 업무를 자세히 열거하고 있으나, 그 중 '사이버보안 기본법'의 특정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무, 다른 부처 소관 사무, 법무성 및 총무성 소관 사무 등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음
3) 사이버보안에 관한 업무는 내각 소속의 '사이버보안 전략본부'가 담당한다고 규정



https://www.kantei.go.jp/jp/singi/it2/senmon_bunka/dejigaba/dai14/siryou1.pdf

https://www.kantei.go.jp/jp/singi/it2/dgov/houan_wg/dai4/siryou2.pdf

https://www.iais.or.jp/articles/articlesa/20210415/202104_02/

<https://blog.goo.ne.jp/k0i8y2o1/e/1a658d250f7204ddc872015605093b15>

<https://president.jp/articles/-/46958?page=3>

<https://jbpress.ismedia.jp/articles/-/65440>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10512-OYT1T50110/>

해외 입법 동향

일본 총무성,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보안 환경에 대비한 ‘원격근무 보안 가이드라인 제5판’ 발표(2021. 5. 31)

일본 총무성이 변화되는 원격근무 환경에 대비하여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보안 이슈와 직무 주체별 상세 역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원격근무 보안 가이드라인 제5판¹⁾’을 공개 (2021. 5. 31)

▶ 개요

- 일본 총무성이 코로나19 시대의 근무 환경 변화상과 사이버공격 기술의 고도화에 대응한 ‘원격근무 보안 가이드라인 제5판’을 발표
 - 총무성은 2004년부터 기업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여 안심할 수 있는 원격근무제도를 도입, 활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왔음
 - 2018년 4월 가이드라인 제4판을 공개한 뒤 이후 원격근무 확산과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와 스마트폰 활용이 늘어나고 사이버공격이 고도화되는 등의 보안 상황의 변화상을 반영하여 제4판에 대한 전면 개편을 단행
 -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기 위해 보안 전담자가 없는 중소기업에서 원격근무를 실시할 때 최소한의 보안 사항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개정안도 함께 공개
- 이번 가이드라인은 원격근무와 관련하여 ▲검토 사항(2장) ▲근무 방식(3장) ▲보안 대책 리스트(4장) ▲보안 대책 해설(5장) ▲문제 사례와 대책(6장) 등으로 구성
 -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원격근무 방식 간 비교, 클라우드·제로 트러스트 등의 보안상의 이슈, 경영자/시스템·보안 관리자/근무자 각각의 역할, 실행 보안 대책, 원격근무 보안과 관련된 문제점 및 관련 사례 소개 등이 새롭게 반영

1) 総務省, テレワークセキュリティガイドライン第5版, 2021.5. 31

〈 원격근무 가이드라인 제4판 및 제5판 간 구성 비교 〉

제4판(2018년 4월)	개정 제5판(2021년 5월)
서론	제1장 서론
제1장 원격근무 정보보안 대책 개념	제2장 원격근무 검토 사항
제2장 원격근무 보안 대책 중점사항	제3장 원격근무 방식 해설
제3장 원격근무 보안 대책의 해설	제4장 원격근무 보안 대책 리스트
	제5장 원격근무 보안 대책 해설
	제6장 원격근무의 문제 사례와 대책

▶ 주요내용

- (원격근무 검토 사항) 업무 수행 시의 보안 관행인 ‘규칙(rule)’, 보안 실행을 담당하는 ‘사람’ 및 ‘기술’ 간 균형의 중요성이 강조

〈 원격근무 보안 관행 요소별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보안 사항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 아닌 원격근무 보안 확보 규칙을 제정 • 원격근무가 일반 사무 환경과 상이한 특징을 고려한 보안 규칙 제정 필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직무 교육 등을 통해 직원 스스로 규칙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한 자각이 필요 • 보안에 관한 필요 지식을 습득할 경우 원격근무 시 피싱 및 표적형 공격 피해 최소화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 근무 방식의 특징이나 활용 방법을 고려하여 편리성과 보안 간의 균형 유지 필요

- 개정안에서는 ‘경영자’, ‘시스템·보안관리자(기존 버전: 시스템 관리자)’, ‘원격근무자’ 간 적절한 역할 분담의 중요성과 각각의 역할을 상세하게 정의

〈 조직 구성원별 주요 역할 〉

조직 구성원	주요 역할
경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근무의 보안 위협과 사업 영향 리스크 인식 • 원격근무 보안 정책 수립 • 원격근무를 위한 조직적 보안관리 체제 구축 • 원격근무 보안 강화 자원(예산·인원) 확보 • 정보보안 관련 규정 및 보안대책의 지속적 재검토 • 원격근무 근무자에 대한 보안 연수 실시 • 보안 사고에 대비한 계획 수립 및 체제 정비 • 공급망 전반에 걸친 대책 상황 파악

시스템·보안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근무 대응 정보보안 관련 규정 및 보안대책의 재검토 • 원격근무 시 사용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적절한 관리 • 원격근무 근무자에 대한 보안 연수 실시 • 보안 사고 대응 준비 및 발생 시 대응 • 보안 사고 및 전조 정보 연락 접수 • 최신 보안 위협 동향 파악
원격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보안 관련 규정 준수 • 원격근무 단말기의 적절한 관리 • 인증정보(패스워드, IC카드 등)의 적절한 관리 • 적절한 원격근무 환경 확보 • 적극적인 보안 연수 참여 • 보안 사고 시 연락 방법 확인 •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 이외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효성과 보안상 유의사항 및 제로 트러스트 보안의 개념과 중요성이 새롭게 포함

〈 원격근무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효성과 고려 사항 〉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효성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시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관리 대상 감소 • 시스템 도입의 신속성 • 시스템 확장 및 축소를 위한 유연성 • 운용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라우드 서비스 및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신뢰성 확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 책임 범위 확인 •정보의 중요도 정의와 클라우드 보관 정보 관리 •적절한 접근권 통제 실시 •엄격한 인증정보 관리 및 인증기법 강화

〈 제로트러스트의 적용 배경과 개념 및 특징 〉

구분	주요 역할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공격의 고도화 • 악성 프로그램 감염 이후 탐지의 어려움 •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화에 따른 경계의 복잡화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네트워크(인터넷)-내부 네트워크(LAN) 간 경계를 통한 방어(경계형 보안)에는 한계가 있고, 내부 네트워크 내에도 위협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데이터나 기기 단위에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어 개념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지 않음 • 데이터나 기기 등을 최소 보안 단위로 인식 • 철저하고 엄격한 이용자 인증과 접근 관리 • 환경(장소·단말 등)에 관계없이 보안대책 수립

○(원격근무 방식 해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일괄 개정된 내용으로, 7개 유형의 원격근무 방식을 정리하고 해설

- 각 원격근무 방식별 보안상 유의사항과 함께 업무 내용 등을 토대로 적합한 방식을 선정 절차와 방식 간 비교를 기술

〈 원격근무 방식 유형별 특징 〉

원격근무 방식	정의	특징
가상사설망(VPN)	• 원격근무 단말기에서 사무실 네트워크에 VPN을 경유하여 사무실 서버 등에 접속하여 업무를 하는 방식	• 업무 재현성이 높고, 통신 트래픽 집중 시에 적합
원격데스크톱	• 원격근무 단말기에서 사무실에 설치된 단말기(PC 등)의 데스크톱 환경에 접속하여 데스크톱 환경을 원격 조작하여 업무를 하는 방식	• 업무 재현성이 높고, 보안성과 비용 간의 균형이 가능
가상데스크톱	• 원격근무 단말기에서 가상 데스크톱 기반 상의 데스크톱 환경에 접속하여 해당 데스크톱 환경을 원격 조작하여 업무를 하는 방식	• 업무 재현성이 높고,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할 시에 적합
보안컨테이너	• 원격근무 단말기에 로컬 환경과는 독립된 보안 컨테이너 (secure container)라는 가상 환경을 마련하고 그 환경 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동작하여 업무를 하는 방식	• 보안성을 요하며, 통신 트래픽 집중 시에 적합
보안브라우저	• 원격근무 단말에서 보안에 특화된 전용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사무실 시스템 등에 접속해서 업무를 하는 방식	• 보안성을 요하며, 통신 트래픽 집중 시에 적합(업무 재현성은 다소 떨어 짐)
클라우드 서비스	• 사무실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않고 원격근무 단말기에서 인터넷상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업무를 하는 방식	• 업무 확장성과 안정적인 통신 트래픽을 요하는 업무 환경에 적합
스탠덜론	• 사무실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않고 미리 원격근무 단말 이나 외부 기록매체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존해 두고, 해당 보존 데이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 비용과 도입의 용이성 측면에 장점을 지니며 임시적인 활용 패턴

○(원격근무 보안 대책 리스트) 경영자, 시스템·보안 관리자 및 근무자 각자의 역할별 보안 대책을 총 13개의 카테고리로 세분화하여 정리

- 원격근무의 일상화에 따라 보안 대책 항목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총 항목 수 98개 ↔ 제4판은 43개 항목)
- 각 보안 대책은 실행이 비교적 용이한 필수적인 요구 사항인 ‘기본대책’과 일정 예산이나 조직 정비를 통해 한층 강화된 보안을 실행할 수 있는 ‘발전대책’으로 구분

〈 원격근무 방식 유형별 특징 〉

대책 분류	설명	직위별 필요 대책		
		경영자	시스템·보안 관리자	근무자
거버넌스·위기 관리	• 원격근무 실시에 따른 위기 관리나, 정보보안 관련 규정 정비	○	○	○
자산·구성 관리	• 원격근무 시 이용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의 자산 특정 및 관리		○	○
취약점 관리	•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실시 등 취약점 완화		○	○
특권 관리	• 부정 액세스에 대비한 시스템 관리자 권한 보호		○	
데이터 보호	• 보호해야 할 정보(데이터)의 특정 및 보존 데이터의 기밀성·가용성 확보	○	○	○
멀웨어 대책	• 악성 프로그램 감염 방지와 식별 및 엔드포인트 보안		○	○
통신 보호·암호화	• 통신 중 데이터 기밀성과 가용성 확보		○	
계정·인증관리	• 정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 관리 및 인증 기법		○	○
액세스제어·허가	• 데이터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를 최소화		○	○
사고 대응·로그 관리	• 보안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로그 확보 및 조사	○	○	○
물리 보안	• 물리적인 수단에 의한 정보 유출 보호			○
위협 인텔리전스	• 위협 동향, 공격 방법 및 취약점 정보 수집		○	
교육	• 원격근무 근무자의 보안 이해도와 의식 개선	○	○	○

※ 음영 부분은 '기본대책'과 함께 '발전대책'이 함께 포함된 항목

▶ 평가

- 일본 총무성의 '원격근무 보안 가이드라인'은 원격근무에 따른 보안 유지를 위한 자원과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지침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을 확보
- 특히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사이버보안의 최신 기술 트렌드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원격 및 재택근무의 일상화에 대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변화된 업무 환경하에서의 보안 대응을 선제적으로 지원

※ Reference

https://www.soumu.go.jp/menu_news/s-news/01cyber01_02000001_00111.html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52937.pdf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52936.pdf

해외 단신

베트남 정보통신부, IoT기기의 네트워크 정보 보안에 관한 기본 요건 목록을 정한 결정 발행

(Lexology, Vietnam: New Cyber Information Security Requirements Issued for IoT Devices, 2021. 6. 15.)

○ 베트남 정보통신부(Bộ Thông tin và Truyền thông)는 소비자 IoT 기기의 네트워크 정보 보안을 위한 기본 요건 목록을 정한 결정(Quyết định)¹⁾ 제736호(Số: 736/QĐ-BTTTT)를 발행

- 동 결정상의 IoT 기기의 네트워크 정보 보안 기본 요건 목록은 총 1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303645 V2.2.1(2020-06)의 섹션 5 이하를 그대로 수용하여 발행한 형태

○ IoT 기기의 네트워크 정보 보안 기본 요건 목록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본 요건	주요 내용
범용 기본 암호 설정 금지	• 암호는 사용자가 정의하거나 기기에 고유한 값이어야 함
취약점 관리 수단 구현	• 제조사는 취약점 공개 정책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공개된 취약점은 적시에 조치되어야 하며, 보증기간 동안 자신이 생산, 판매, 운영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식별, 시정해야 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유지	• 제조사는 운영기간 동안 적시에 기기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할 계획을 세워야 함
민감 보안 매개변수 안전 저장	• 영구 저장소에 보관된 암호 및 암호화 키 등 보안 매개 변수를 안전하게 저장해야 함
보안 연결 사용	• IoT기기는 보안이 갖춰진 의사소통을 위해 암호화가 필수적이며, 업데이트 가능해야 함
공격에 대한 노출 최소화	• 사용하지 않는 모든 네트워크 및 논리적 인터페이스는 비활성화 되어야 함
소프트웨어 무결성 보장	• 안전한 부팅 작업을 제공하고 무단 소프트웨어 변경을 식별해야 함
개인정보 안전성 보장	• 기기와 서비스, 특히 관련 서비스 간에 전송되는 개인정보의 기밀성을 보호
시스템 중단 시 복원 기능 확보	• 네트워크 및 전원 중단 가능성을 고려해 소비자 IoT기기 및 서비스는 복원력을 갖춰야 함
시스템의 원격측정 데이터 검사	• 기기가 수집하는 모든 원격측정(telemetry) 데이터에 보안 이상이 있는지 검사해야 함
사용자 정보의 용이한 삭제	• 사용자는 쉬운 방법으로 기기에서 사용자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받아야 함
간편한 기기 설치 및 유지 보수	• 소비자 IoT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는 사용자가 최소한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제조자는 사용자에게 기기를 안전하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함
입력 데이터 유효성 입증	• 잘못된 형식의 데이터 또는 코드를 수신하여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해야 함

1) 베트남의 각 기관 및 그 기관의 직속단위 활동과 조직에 관하여 해당분야의 경제적·기술적 한계와 기준을 규정하고, 자신의 관리기능 혹은 정부가 위임한 문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법률 문건. 우리나라 법체계에서의 시행규칙과 유사

인터넷 법제동향

Vol. 165(June 2021)



| 발 행 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Tel. 1544-5118

| 기획·편집 | 법제연구팀

| 발간·배포 | www.kisa.or.kr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 내용의 무단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